

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2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1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개정이유

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(위원회의설치)에 위원회의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지원 대상자선정 및 융자금 상환 연기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-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.
- 위원회의 구성, 회의소집 등 위원장의 임무 구체적 기술
-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

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심의위원회) ①새마을소득사업 용자대상자 선정 및 용자금 상환연기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

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정담당이 된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, 새마을 소득사업 관련 단체임원, 농업관련단체장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새마을소득사업 용자대상자 선정
2. 새마을 소득사업 용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
3. 기타 새마을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.

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· 안
제3조(위원회의설치) ①새마을소득사업 읍자대상자 선정 및 상환연기등 중요한 건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새마을소득사 업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	제3조(심의위원회)①새마을소득사업 읍 자대상자 선정 및 읍자금 상환연기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새마 을소득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 원을 둔다.	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
③ 안전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2/3이상 참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 다.	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정담당이 된다.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공무
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 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원, 새마을 소득사업 관련 단체임원, 농 업관련단체장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.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 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. 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. 1. 새마을소득사업 읍자대상자 선정 2. 새마을 소득사업 읍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 3. 기타 새마을 소득사업과 관련하 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 송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바에 의 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